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 4. 12.

제안자 : 김준석 위원외

1. 수정이유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감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 (안 제2조 제1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u>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u>으로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세 이상 주민 100명</u> -----</p>